

기술개발보상절차에 관한 규정

「1995.9.18. 건설교통부훈령 제109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의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개선제안공법”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공법 기자재 등(이하 “공법”

이라 한다)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용신청

① 발주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개선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건설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을 포함하며, 이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비절감제안서 및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을 비교·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각6부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검토서, 세부공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3.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

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고
4. (삭제)

5. 기타 개선제안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②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성립일 또는 건설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 방법
2.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서류
3.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4. 이의신청방법

제4조 사용결정 및 통보

① 발주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기관의 장은 하수급인이 신청한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시 건설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장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이의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장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있다. 다만,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중앙위원회의 심의요청

① 제4조 제4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1부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 및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서 10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된 사항을 15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7조 중앙위원회의 심의

① 중앙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제안공법의 사용가능범위와 한계를 명시한 심의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심의요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심의결과 통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 및 그 계약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결과 조치

발주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개선제안공법사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설계변동 등 사후조치

① 발주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감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 승인된 개선제안공법의 신청인이 하수급인일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개선제안공법이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시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중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지된 하도급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발주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개선제안

기술개발보상절차에 관한 규정

공법 사용신청 및 승인사항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동공법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기관의 장이 승인한 개선제안공법에 대하여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각 중앙관서의 장,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의 심의절차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청절차

